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Th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윤진기**

Jin-Ki Yoon

〈 목 차 〉

- I. 서 론
- II. 중재산업, 국제경쟁 그리고 국내환경
- III. 중재산업 발전 방안
- IV. 중재진흥법에 대한 검증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중재산업, 중재상소제도, 집행문, 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소송 배제합의, 변호사법, 중재교육, 중재산업진흥법

* 이 논문은 2018.6.22.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중재학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재산업 발전 방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yoonkim@kyungnam.ac.kr

I. 서론

우리나라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진흥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¹⁾ 2017년 6월에 시행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아시아지역에서 국제중재 3국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제중재에 영향력이 비교적 큰 국가는 중국의 본토와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두 나라였다. 이에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중재 활성화를 선언하고 이에 끼어듬으로서 3국이 되었다.²⁾

2014년 말에 필자는 “중재제도의 선진화를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화하고 중재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재의 국제화를 위하여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찾거나, 조금씩 투자액을 증가시켜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든가, 아니면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여 현상유지를 하든가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마도 현재 중재를 관할하는 우리나라 주무 관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세 번째 방안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제중재에는 주도권이 중요하며 처음에 주도권을 상실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아시아의 세기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경쟁국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중재의 국제화를 시도해야 한다. 한가로운 정책을 펴고 있을 때가 아니다.³⁾

중재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바뀌고, 중재진흥법이 제정

- 1) 2015년 8월 17일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 10월 14일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5년 11월 5일 중재진흥법틀안이 정부발의로 18대 국회에 제출되어(의안 제1917603호) 해당위원회에서 심사 중 국회입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9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8월 18일에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6년 12월 2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이 제정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 2) 말레이시아도 정부지원을 받아 시설을 정비하고 야심차게 출발은 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중재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2016년 KLRCA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총 62건의 중재사건 중에서 55건이 국내사건이고, 국제사건은 7건이다. 금액으로는 조정 등을 포함해서 2억9천5백만 달러(대략 2천9백5십억 원) 정도이다. 어쨌든 KLRCA는 ADR을 위한 멀티서비스 글로벌 허브를 표방하고 있다. KLRCA Annual Report 참조. <https://aiac.world/wp-content/annualreport/2016annual/PDF.pdf> (2018.06.16. 검색). 일본은 중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JCAA(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일본상사중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간단한 설명만 있어서 활동상황을 잘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3) 윤진기, “중재제도의 선진화를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한다”,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12.1, 권두사, pp. iv - v.

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의 지원까지 겹쳐 국제중재 활성화에 필요한 물적 시설도 구비되었다. 이로써 필자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우리나라 중재정책이 가닥이 잡아졌고,⁴⁾ 중재진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권에서 중재가 새로운 산업으로 지칭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세기가 거론되고, 아시아의 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아시아의 세기가 3국의 중재 경쟁국 모두에게 충분히 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 3국시대에 후발주자인 우리가 승자가 되어 중재패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중재산업, 국제경쟁 그리고 국내환경

1. 중재산업과 국제경쟁

(1) 중재산업

‘중재산업’이라는 말은 마치 소송의 경우에 ‘소송산업’이라는 말이 어색한 것처럼 어색하다. 그러나 중재진흥법은 중재산업을 ‘중재의 유치 및 심리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⁶⁾ 중재산업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지만, 중재진흥법은 중재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입법되어 있다.

원래 산업이라는 말은 의류산업, 철강산업 등과 같이 재화를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이나, 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등과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산업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 활동의 공공성은 많이 희박해지고 경제성 내지는 상업성이 강조된다. 중재가 산업이라는 것은 중재가 경제활동의 하

4) 법무부에서는 필자가 글을 쓰기 훨씬 이전인 2011년부터 국제중재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3년5월27일 서울중국제중재센터(SIDRC)를 개관한 후 지속적으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5) 중재진흥법 제2조 제2호.

6) 여기서 제2호의 “...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분쟁해결시설의 운용이 중재산업의 주된 내용인 것처럼 그 의미를 잘못 전달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 법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복합중재센터’의 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준호, “중재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2017.12, p.40.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재산업 자체의 개념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진흥법상의 중재산업에 대한 개념이 중재산업을 포괄하는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에는 시장이 형성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있고, 이를 매수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가 있다. 이들의 행위는 이해관계에 따라 행해지며, 시장 참여자들 간에 경쟁이 존재하며,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다. 중재산업이란 용어는 중재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러한 시장 원리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분야가 하나의 산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다소 있어야 하는데, 중재의 경우 크지는 않지만 하나의 산업에 이를 정도의 시장규모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⁷⁾ 중재는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 중의 하나이며, 전체적으로는 법률서비스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법률서비스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고, 더 나아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같이 시장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미 하나의 산업 영역에 들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한 영역으로서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접근이라고 보인다.

중재가 산업이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육성을 위하여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시장참여자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중재산업의 발전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중재산업과 국제경쟁

2018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트레이드타워 18층 대심리실에서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출범식을 하고, 기존의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를 흡수하여 기반시설의 구축을 마쳤다.⁸⁾ 대한상사중재원이 아시아에서 국제중재

- 7)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가 2017년 한해 수임한 중재사건만 해도 금액으로는 40.07억 달러(대략 4조7억 원)에 달하므로, 여기에 중국 본토와 홍콩, 일본 및 우리나라의 시장을 합하면 크지는 않지만 산업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70여건에 그치는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15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게 되는 경우 1년에 6,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중재와 관련하여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의 중재 관련 직종에서 약 6,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수철,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보고서」, 삼일회계법인, 법무부, 2016, p.33). 성준호, 앞의 논문, p.39 각주 7에서 재인용. 지난 2013년 5월27일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를 개소하면서 당시 변호사협회는 SIDRC 개소에 따른 사건당 경제효과는 심리시설 이용과 속식비 등을 포함해 약 25억 원, 향후 5년간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50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 내달 개소..성공조건은?” 파이낸셜뉴스 2013.04.22., <http://www.fnnews.com/news/201304221514472125> (2018.06.12. 검색)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 8) 서울중재센터의 총 면적(1911m²)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중재심리시설 면적(약 1300m²)의 약 1.5배이며, 뉴욕국제중재센터(NYIAC) 중재심리시설 면적(약 500m²)의 약 3.8배에 달한다. 또한 17층 사무공간에는 국내 외 9개 중재 유관기관들의 입주자 확정 내지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서울국제중재센터에 입주해 있었던 4개 기관에 비해 5개 기관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개최”,

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국에서만으로도 충분한 중재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이미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하여 아시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및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공언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KLRCA)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또 이 외에도 저명한 국제중재기구와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경쟁해야 한다. 2018년 1분기에 ICC 국제중재법원의 싱가포르 사무소가 개소될 예정이다.⁹⁾

중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결국 사건 수입의 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최근 수년 동안 경쟁 국제중재기구의 사건 수입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2014~2016년 동안 경쟁 국제중재기구의 사건 수입 수

(단위: 건)

중재기구	2014	2015	2016
중국 국제중재 전체	387	437	485
홍콩국제중재센터	252	271	262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22	271	343
대한상사중재원	87	74	62

<표 1>에서 사건 수의 추이를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경쟁력은 경쟁 중재기구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하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2017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2017)를 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무려 452건을 접수하였고, 금액으로는 40.07억 달러(대략 4조7억 원)에 달하여¹⁰⁾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다.

김상찬 등에 의하면, 싱가포르가 중재지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SIAC이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중립성’과 ‘국제성’, ‘평판 및 인식’, ‘중재규칙’ 등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 외에 싱가포르가 중재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아직 국내에 없는 것 같다. 좀 더 구

NewsWire, 2018-04-20,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8013> (2018.06.12. 검색)

9) 2017년 6월 28일 열린 제3회 ICC Asia Conference에서 싱가포르 법무부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s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MOU를 체결하여 내년(2018) 1분기 싱가포르 Maxwell Chambers에 국제중재를 위한 사건처리 사무소 개소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싱가포르오피스는 홍콩, 뉴욕, 상파울로에 이어 ICC 중재법원의 네 번째 해외 사건처리 사무소가 된다. Seow Bei Yi,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y to open office here" PUBLISHED JUN 29, 2017, 2:39 AM SGT, file:///C:/Users/yoonkim/Downloads/International%20arbitration%20body%20to%20open%20office%20here.pdf (2018.06.12. 검색)

10) SIAC, Annual Report 2017.

11) 김상찬·김유정, "싱가포르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2014.6, pp.157-158.

체적으로 인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싱가포르의 국제중재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경제적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약 7,000여개의 기업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이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사업의 허브로서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기업이 싱가포르에 지역총괄 회사를 두고 있어서 아시아 전역의 분쟁을 싱가포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²⁾ 또 중화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중재의 활성화는 단순히 법률이나 물적 설비 이상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 점은 중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시아 사업의 허브 목적으로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수가 싱가포르만큼 많은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제적 기반은 경쟁할 만하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 8,513개소, 외국법인 국내지점 1,880개소,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 1,692개소로 총 12,085개소이다.¹³⁾ 이 중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을 합하면 총 10,393개소이다.

세계은행(WB)이 집계한 201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4112억 달러(약 1589조7168억 원)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⁴⁾ WTO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10,521억불이며, 세계 전체 교역액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순위로는 9위에 올라 있다.¹⁵⁾

경쟁자인 홍콩은 교역액이 11,402억 달러로 7위를 점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교역액이 7,003억 달러로 15위를 점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사실은 중재경쟁국들이 원래 무역거래가 국제중재를 받쳐 줄만큼 탄탄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국제중재는 ICC중재법원처럼 이미 저명성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중재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받쳐 주어야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재시장을 받쳐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시장 환경은 좋은데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국제중재의 활성화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법

12) 위의 논문, p.141.

13) 통계청,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2005~], 자료갱신일: 2017-11-0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218 (2018.06.16. 검색)

14) 참고로 1위 미국은 18조5691억 달러, 중국은 11조1991억 달러, 일본은 4조9394억 달러, 독일은 3조4668억 달러, 영국은 2조6189억 달러, 프랑스는 2조4655억 달러, 인도는 2조2635억 달러, 이탈리아는 1조8500억 달러, 브라질은 1조7962억 달러, 캐나다는 1조5298억 달러이다. “2016년 한국 GDP 세계 11위… 11년째 10위권 밖” ChosunBiz, 2017.08.0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9/2017080900680.html#csidxbc67c9f37909b41bab45e5bf401205e

15)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발표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주요내용”, 보도참고자료, 2018. 2. 16. (금), p.4.

16) 위의 자료.

률서비스의 적자는 2015년 기준 연 7,000억 원 정도로서 기업의 중재수요를 국내에서 해결한다면 정부의 유출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¹⁷⁾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중재산업과 국내환경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접수한 국내 중재사건 수는 2014년 295건, 2015년 339건, 2016년 319건 등 그 수가 매우 미미하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외에도, 알선, 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모두 합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 2016년의 경우, 중재 319건, 알선 753건, 상담 8,792건 등 국내사건은 총 9,801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29,912억 원(대략 3조 원)에 달하며, 이 중에서 중재는 16,610억 원(대략 1조 7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자료만 가지고 중재산업의 국내환경을 알 수는 없다. 아직까지 중재시장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중재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더 연구가 나와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중재와 대상을 거의 같이하는 민사소송 1심 사건의 수와 금액을 가지고 잠재적인 중재시장의 규모를 일부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제1심 민사본안 사건(합의, 단독, 소액 포함) 건수는 접수 기준으로 973,310건이며, 이 중 소액 사건이 686,407건이고, 이 중에서 1천만 원 미만 소액사건이 581,839건, 2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이 103,090건이다.¹⁹⁾ 2016년 제1심 민사본안 사건(합의, 단독, 소액 포함) 청구소송물가액은 접수 기준으로 54,410,990,956,604원(대략 54조 4천억 원)이 되며, 이 중 소액사건 청구소송물가액은 3,686,873,907,886원(대략 3조 6천억 원)이다.²⁰⁾ 이 중에서 소액사건 가액을 뺀 50조 8천억 원은 잠재적인 중재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심 민사본안 사건과 비교하여 대략 50조 8천억 원 중에서 3조 정도만 가져와도 중재건수와 금액은 현재의 약 3배 가까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중재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중재가 활성화 되어 중재사건이 더 많아지면 국가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재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면, 시장이라는 측면 외에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17) 한중규, “국제중재산업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구-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5호, 2016.7, p.102.

18)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2016년 실적(전년도 비교)” 참조.

19) 2016년 사법연감, (표 7) 민사본안사건 소송가액별 비교-접수, p.563.

20) 2016년 사법연감, (표 9) 민사본안사건 청구소송물가액-접수, p.564.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촉진이라는 관점에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재시장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하여 거의 독점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다른 법률이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다양한 중재기구가 존재한다. 예컨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²¹⁾ 한국중재원,²²⁾ (사)기독교화해중재원,²³⁾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조정중재센터,²⁴⁾ 남북상사중재위원회²⁵⁾ 등이 있다.²⁶⁾ 이 외에 IIPAC(아이팩)조정중재센터²⁷⁾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주로 해결하는 중재기구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재기구들이 중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극히 미미하다.

중재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재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제 중재시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발 경쟁자로서 출발하려고 한다.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내 중재시장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중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다른 사적 중재기구가 중재를 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인으로 활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든지, 변호사나 아닌 자가 중재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비용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든지, 변호사가 아닌

- 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12. 4. 8.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이며, 10개 조정부와 10개의 감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내과 3개, 외과 3개, 기타 2개, 치과 1개, 한의과 1개의 조정부와 감정부가 있다.
- 22) 한국중재원은 민사 사법분쟁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는 전주지역의 법학 관련 교수와 변호사들이 2007. 3. 설립한 중재법상의 민간 중재기관으로서 52명의 중재인이 활동하고 있다. 소재지는 전주 시 덕진구 기린대로 256이다.
- 23) (사)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및 교인들 사이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2008. 설립되었으며, 2011.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5이다.
- 24)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서, 2,000만 원 이하 민사소액 분쟁사건을 중재비용 없이 송달료만 납부하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소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4층이다.
- 25)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이다. 남북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2003. 10.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3. 9. 11.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 26) 정운섭, “국내 중재절차와 실무-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제134기 중재/ADR 특별연수 자료집, 2014.4.19, pp.28-30.
- 27) IIPAC(아이팩)조정중재센터는 IIPAC(국제 지적재산권 대체적 분쟁해결 센터: International IP ADR Center)이 설치한 조정중재센터이며, 특허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주로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조정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중재와 관련해서는 미국 사법중재조정기구(JAMS)의 국제중재규칙을 사용하고 있고, 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법중재조정기구(JAMS)의 국제조정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3층이다.

자가 중재사건을 대리해주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재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 사실상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시장 환경 아래서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에 대하여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다. 중재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구부터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 경쟁이 가능한 상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경쟁을 막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중재 참여자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⁸⁾

이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문리해석을 해보면, 사적 중재기구가 중재를 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 및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인으로 활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나 아닌 자가 중재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비용을 받은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사건을 대리해주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²⁹⁾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단 하나의 사적 중재기구도 시장에 나설 수가 없다. 사적 중재기구가 중재를 하여 비용을 받는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변호사가 아닌 중재인들도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다. 중재의 발전 역사를 고찰해보면 이런 결과는 전혀 중재와 어울리지 않는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외국변호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중재를 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법자문사법이 규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28)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생략

29) 2018.6.22.에 “중재연수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출범에 따른 중재전문가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강수미 교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이면 중재인으로서 중재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조정중재센터가 중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재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변호사협회가 아닌 곳에서 개설한 사적인 중재기구, 예컨대 한국중재원 같은 곳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을 우려하여 적절한 중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하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³⁰⁾ 결국 대한민국법령에 관한 업무는 한국 변호사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정을 아는 외국변호사들이 한국을 중재지로 하도록 적극 나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법을 그대로 두고 중재산업 활성화를 논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중재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규정을 그대로 두거나, 외국법자문사법에 외국변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중재가 산업이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국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중재를 대리하게 해주어야 중재가 활성화 된다. 중재가 활성화 되어야 변호사들의 국제적 일거리도 늘어나는 것이 이치다. 국내중재도 마찬가지다. 사적 중재기구가 늘어나고 중재 붐이 일면 자연 변호사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대리를 허용해도 실력이 변호사들이 낫다는 것을 시장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굳이 이러한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과잉규제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규제인 것이다.

홍콩에서 중재할 경우에는 홍콩변호사뿐만 아니라, 외국 법률자문가, 또는 법률가가 아닌 대리인이 자신의 중재를 대리하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³¹⁾ 싱가포르에서도 법률상 외국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도 싱가포르의 중재법, 국제중재법에 따른 중재안건을 수임하거나 조언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 받지 않는다.³²⁾

생각건대, 사적 중재기구나 중재 참여자가 비용이나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규제는 철폐하고 중재와 일반 법률사건을 구분해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의 규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3. 소결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재를 시장에 맡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중재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우리나라처럼 전통성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이 유지되는 국가에서는 좀처럼 깨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다행하게도 중재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다소 쉽게 시장적 접근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중재시장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경쟁력은 매우 낮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은 결코 다른 경쟁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국내 중재시장의 경우에도

30)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1) 한종규, 앞의 논문, p.109.

32) 김상찬·김유정, 앞의 논문, p.141.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시장원리에 기초한 중재제도의 운영이 결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산업에 시장 원리에 따라 중재 참여자들의 경쟁을 보장하는 기제를 확보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Ⅲ. 중재산업 발전 방안

1. 기획사로서의 국제중재센터 운영

(1) 기획적 사고와 마케팅

제도, 지리적 조건, 기타 물적 인적 설비 등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는 기획적 사고이다. 중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이벤트를 하고 끊임없이 중재수요자의 관심을 촉발하여 경쟁 중재센터보다 더 많이 중재를 유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재센터가 마치 연예기획사와 같은 유연한 사고로 운영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오프라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고, 그 노출이 품격 있고 공정한 중재의 가능성을 홍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중재산업 개념을 인정하고 중재를 시장에 들여놓은 이상 시장논리에 따라 이른바 중재마케팅에 철저하게 충실해야 한다. 특히 이미 선두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 충실한 콘텐츠와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예컨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경우 SIAC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SIAC events - Highlights’ 항목에서 별다른 클릭도 없이 최근 연도의 이벤트를 리뷰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SIAC에서 마치 큰 국제적인 중재 행사를 엄청 하고 있으며, 그만큼 연구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통을 통하여 중재수요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SIAC이 마치 매우 뛰어난 총감독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획사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KCAB³³)의 영어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SIAC의 그것과 매우 차이가 난다. 더구나 인터페이스에 올려진 사진은 참석한 인원도 적고 발표자나 연사도 없는 것으로, KCAB의 운영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대표하거나 KCAB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³⁴ 게다가 ‘2015 International Arbitration Expert Program’라는 사진설명도 첨부하고 있어서 2018년 6월인 현재까지 아무런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도 없었다는 듯한 이미지를 외국의 중재소비자에 남기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KCAB에는 SIAC과 같은 뛰어난 총연출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이 장 대한상사중재원의 홈페이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SIAC의 홈페이지와 대비시켜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KCAB로 쓰고,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34) 이것은 2018.06.15. 검색 기준이다.

‘KCAB Notice’에 들어가 봐도 잘 찍혀지고 요령 있게 설명된 사진 한 장 볼 수 없다.³⁵⁾ 바쁜 세상에 어느 중재소비자가 그 많은 Notice를 일일이 클릭해서 보고 KCAB가 아시아의 굉장한 중재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싶어 할지 의문이다. 그냥 인터페이스에 게재된 철이 매우 지나간 사진 한 장 보고 지나갈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KCAB 정도 되면 예술적 감각을 갖춘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기사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의 효과를 겨냥하면서 외국의 중재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연출해 내는 총감독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로는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대형 중재사건들이 많고, 잘 알려진 비교적 소수의 중재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계자들이 국제적 명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마케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³⁶⁾ 반면에 국내중재는 서민들의 사건도 잘 해결해 주어야 하는 임무를 다해야 하므로 모든 것을 고급스럽게 할 수는 없다.³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KCAB의 접근은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할 수 있다.³⁸⁾

서울국제중재센터는 KCAB보다는 다소 상태가 양호하다. 대체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런데 각 뉴스나 안내가 SIDRC의 중재전문성과 공정성의 돋보일 정도의 편집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나아가 매우 활발한 국제중재센터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중재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³⁹⁾ 특히 펜스나 주한 미국대사 등 공직자를 사진에 크게 노출시키고 중재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이 없어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강하게 받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⁴⁰⁾ 게다가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난데없이 사진구경만 한 셈이 될 것이다. 기획적이고 정성스런 편집이 필요하다.

이사진(Directors) 소개에 있어서도 군데군데 사진이 비어 있는 모습은 무언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중재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 고급스러움을 선호하는 국제중재 시장의 큰손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자신의 임원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건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

35) 이것은 2018.06.15. 검색 기준이다.

36) 물론 분쟁가액이 적은 국제중제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7) 물론 국내중제도 대규모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고급스럽게 마케팅을 해야 활성화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38) 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업체의 경영진이 직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프레드 터너 전 맥도날드 회장의 말을 SIAC과 KCAB의 경쟁에 적용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 중재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디테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왕중추 저, 허유영 옮김,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울림, 2016 참조. 위 프레드 터너의 말은 이 책 p.217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제는 명실공히 소비자들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 수 없게 된 것이다. 드높아진 소비자들의 요구와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테일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위의 책, p.216.

39) 이것은 2018.06.15. 검색 기준이다.

40) 이러한 편집은 중재기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인터페이스에서 경쟁 중재센터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정말 쉽게 타 센터와 비교해보고 자신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다른 동료들과 그 느낌을 공유하지 않겠는가. 파트너를 소개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링크를 걸어두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 필자가 SIAC에 클릭하여 그곳에 접속해보니까 SIDRC보다 정리가 잘되어 있고, 무척 활동적으로 보이는 중재기관이 나타나서 부지불식간에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⁴¹⁾

전체적으로 경쟁자인 SIAC와 비교해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기획력이 뒤진다고 생각된다.⁴²⁾

또 SIDRC 홈페이지 뉴스에는 자료가 없는 것도 있다.⁴³⁾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홀함이 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열심히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해도, 막상 중재소비자들이 한국에서의 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서, 오프라인 홍보에서 사용한 막대한 비용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오프라인 마케팅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중재 우선 전략 검토

대한상사중재원이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합하면서 신규 심리시설에 국제중재를 포함한 국내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그 심리시설의 국문 명칭은 ‘서울중재센터’로 명명되었고, 영문 명칭은 서울국제중재센터의 대외인지도를 계속 활용하고자 이의 영문명과 동일한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로 명했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경쟁 중재기구인 홍콩국제중재센터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를 우선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도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⁴⁵⁾ 외국 중재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중재기구를 선택할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 국내중재 우선으로 되어 있는 KCAB보다는 SIAC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KCAB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성(International)’을 강조하여 이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구상에 의하면, ‘KCAB International’이 전면에 나갈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

41) 이것은 2018.06.15. 검색 기준이다.

42) 물론 이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단지 참고의 자료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43) 이것은 2018.06.15. 검색 기준이다.

4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개최,” NewsWire, 2018-04-20 17:40,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8013> (2018.06.12. 검색)

45) 이것은 2018.06.15. 검색 기준이다.

한 브랜드 네이밍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이참에 네이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아시아 국제중재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때에 국제성을 강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국제성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나서더라도 이미 주도권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면에 내세우는 브랜드 네임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경쟁 중재기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작년(2017년)에 건수로는 452건, 금액으로는 대략 4조7억 원 정도의 국제중재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⁴⁶⁾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중재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이미 다소 실기한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국제중재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옳아 보인다. 아시아에서의 국제중재 경쟁은 실기하면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국제중재 업무를 우선하게 되면, 국내중재 업무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중재는 급성장할 수 있다. 국내중재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규모가 있고, 소송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 중재시장의 규모는 급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쓰게 되면 국내중재는 반드시 활성화되게 되어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재기구가 마치 기획사처럼 선선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동성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중재원 경영전략에 있어서 국제중재를 전면에 내세워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중재 경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중재도 국내중재도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중재사건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싱가포르와 홍콩에 밀리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국내에 영향을 미쳐 국내중재의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세계 최고의 중재법에 대한 비전

(1) 서언

현재 법무부의 중재진흥 전략은 대체로 싱가포르나 홍콩의 복합중재센터 설립을 위주로 하는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기의 논의에 의하면, 싱가포르 Maxwell Chambers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주로 시설과 정부지원 측면에서 검토하고

46) SIAC, Annual Report 2017.

있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경제적 요인도 고려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중재법의 개선을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영국 로펌 White & Case와 런던 Queen Mary 대학의 국제중재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발전한 중재지는 싱가포르와 홍콩인데, 주된 발전 요인은 심리시설의 개선(Better hearing facilities)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심리시설이 중재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당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심리시설의 개선(better hearing facilities)이 50%, 해당 심리 장소에 익숙한 우수한 중재인의 선정가능성(availability of quality arbitrators who are familiar with the seat) 49%, 더 나은 지역적 중재기구의 존재(better local arbitral institutions) 47%, 국가 중재법의 개선(improvements to national arbitration law) 46%, 당해 심리장소에서 전문화된 법률가의 활용가능성(availability of specialised lawyers at the seat) 40% 등 지역의 중재 발전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⁴⁹⁾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국가 중재법의 개선’ 항목이다. 비록 46%에 해당하여 시설 항목과 4%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차이는 시설만 강조되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보이며, 거의 동일한 정도로 중재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모두 거의 비슷해진 규모는 덜 중요해지고, 지리적 경제적 요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요인들이므로, 결국 중재법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중재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개정 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에 중재법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⁰⁾ 그러나 현재의 중재법이 세계 최고의 중재법이 될 정도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세계 최고의 중재법’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세계의 중재법은 진화 중에 있으며, 더 나은 중재법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중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최고의 중재법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중재법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UNCTRAL 모델중재법에 부합되는 중재법이면 그것은 중재법으로서 매우 진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간에 중재법이

47) 장준호, “중재법 개정계획,” 2014년 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중재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제언, 한국중재학회, 2014.7.2, p.62 이하.

48) 김봉진, “[지정토론문] 법무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저스티스』 158-3, 2017, p.398 Chart 12: In what ways has this seat improved.

49) 위의 글. 원래 이 조사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백분율이 내용과 같이 높은 항목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

50)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2017, p.364.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해소하여 국가 간에 중재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더 좋은 중재법을 발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중재소비자를 전제로 할 때, 세계 최고의 중재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흐트리지 않은 한에서 중재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재법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나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중재법이 최고의 중재법이다. 물론 중재소비자들은 국제중재나 국내중재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주로 변호사가 기업업무를 대리해 주므로 변호사들에게 최고의 중재법이라고 인식되어야 하지만,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변호사 외에도 일반인들도 중재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 중심의 중재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편리한 임시처분제도, 단심제에 대한 불안 해소, 효과적인 중재판정 집행, 법원의 중재친화적 태도와 실무처리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관건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2) 단심제에 대한 불안과 해소

단심제는 중재제도의 핵심이며, 자랑거리이다. 중재이용을 홍보하는데도 단심제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여 판결의 확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중재는 단심제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아무래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소송에 비하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단심제의 이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될 것만은 아니고 현행 중재법 하에서도 그 집행과정에서 소송보다 장기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⁵¹⁾

특히, 실무상 중재의 단심제적 성격이 오히려 중재신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중재사건은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가액이 비교적 큰 사건들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법률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실무자들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단심으로 종결하였는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상급 경영자들로부터 더 다투어볼 수 있는데 왜 단심제인 중재에 회부하여 일을 그르쳤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⁵²⁾ 특히, 중재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난 후 그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계약 당시에 중재합의를 권유한 변호사를 비난하기도 한다.⁵³⁾

그래서 중재를 해서 진 적이 있는 기업은 향후 분쟁을 다시는 중재에 회부하려고 하지

51) 자세한 것은 윤진기,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12, p.28 이하.

52) 이것은 기업에서 분쟁해결 실무를 맡고 있는 고위 임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다. 또 학회의 세미나에서 몇 차례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53) 홍석모, “중재상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2010, p.6.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경영학적 관점과는 매우 배치된다. 실제로 미국 내 606개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3%가 국제분쟁에서 중재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상소제도의 부재를 들고 있다.⁵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에서 상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만약 중재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단심제의 특성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특히 중요한 중재수요자에 해당하는 기업 실무자를 가끔 곤경에 처하게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번도 이러한 문제가 중재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 적이 없다. 중재의 단심제로서의 장점을 의심하거나 상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중재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중재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제때에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심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기피되는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나라 중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일이다. 상대방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그 나라의 당사자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서로 자기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교섭력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 선진국에서 기술이나 자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러한 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제3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렇게라도 합의를 하게 되면 큰 성과를 거둔 셈이 된다. 이때 중재를 주장한 이유는 중재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분쟁을 끝낼 수 있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는 거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최소한 상대방 국가를 피해 중립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⁵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심제와 상소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를 선택하기를 망설이는 절반 이상의 기업과 상대방 국가를 피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실무자나 상소가 허락되는 중재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상소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

54) 위의 논문. 우리나라에서도 중재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중재 인식이나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 이러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55) 위의 논문, p.4.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유럽 내에서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59년에 설립된 단체인 European Court of Arbitration(이하 CEA라 한다) 은 중재제도 내에서 상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⁵⁶⁾ 또 곡물, 원자재 등의 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재를 의미하는 Commodity Arbitration에서는 상소절차를 인정한다.⁵⁷⁾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이하 CPR이라 한다)⁵⁸⁾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미국 내 약 220여개의 로펌, 기업 및 개인(교수, 판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중재판정이 비정상적으로 내려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수한 중재인들에게 다시 검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 이를 반영하여 상소절차를 채택하고 있다.⁵⁹⁾ 즉, 기존의 법원에 대한 하소연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법 적용이나 사실파악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중재제도 내에 둔 것이다. CPR 상소절차는 미국 국내중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상소심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제10조에서 허용하는 근거 외에 추가로 두 가지 경우를 더 허용하고 있는데, (1) 적합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결정을 내리는 등 중대하고도 편파적인 법 적용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기록에 의해 명백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이다. 상소판정부는 연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중재인 그룹에서 7명을 선발한 후 양 당사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명으로 구성한다. 3심제가 허락되지 않는 중재이므로 상소심 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경륜 있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최종판정을 내리게 하고 있다. 중재의 신속성을 유지하고 상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절차를 채택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소절차는 일반 중재규칙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상소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존재한다.⁶⁰⁾

위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중재절차 내에 상소제도를 두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선택

56)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의 사실관계 파악 오류나 법 적용의 실수에 대해 재검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CEA는 이러한 경향에 따르지 않고 원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심리 할 수 있는 상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CEA에 가입하고 있는 14개국 간에 발생하는 국제중재에 대하여 적용된다. 상소가 허락되는 중재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서에 CEA에서 제공하는 표준중재조항을 포함시키면 된다. 위의 논문, p.8.

57) 일반적으로 중재에 상소할 권리가 보장되면 신속성을 해치게 되고 따라서 중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Commodity Arbitration은 상소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위의 논문, p.9.

58) CPR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https://www.cpradr.org/> (2018.10.16. 검색) 참조. Annual Review를 살펴보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홍석모, 앞의 논문, pp.9-10.

60) 위의 논문, p.10.

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중재제도의 확립은 시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는 단심제가 기본이므로 상소 제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3) 효과적인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를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중재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사적 중재기구에서 중재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방한 잠재 중재수요자에게 중재를 권유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중재판정을 집행할 때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 종사자들은 중재에 대한 전 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결정과 집행문 부여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판결의 집행문 부여는 판사가 아닌 법원사무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⁶¹⁾ 중재판결의 집행문 부여는 판결과 달리하여, 반드시 중재 전담 판사가 하도록 하고, 판사는 집행문 부여 여부를 심사하면서 승인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동시에 판단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집행문 신청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 또는 그 등본이 첨부된 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집행문피신청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용이하게 집행문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⁶²⁾

실질에 있어서는 현행 집행결정 신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일반 중재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의 하나로 인식을 해서 중재를 함으로써 중재와 소송 이중의 절차진행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경우에 패소당사자가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집행거부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집행문이 쉽게 부여된 것에 대하여 다퉴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집행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는 집행신청을 받고 집행거부결정 신청을 하

61)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민사집행법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2) 이것은 영국의 간이절차에 의한 집행 방법과 유사하다. 영국의 간이절차에 의한 집행 방법에 의하면, 집행신청인은 중재합의와 중재판정 또는 그 등본이 첨부된 집행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집행피신청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ex parte) 비교적 용이하게 집행허가명령(order of leave)을 내리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이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수 있다.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pp.243-244. 이 간이절차에 의한 집행은 주로 영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이용하는데 이용된다. 위의 책, p.243.

든지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전에 사법통제를 1차 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가 다투고 싶을 때에는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에서 다투듯이 다툴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큰 불합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집행은 국내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과는 구분해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

현행 중재법 하에서, 만약 중재판정의 효력을 규정하는 제35조 단서를 개정위원회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중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승인거부사유가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고⁶³⁾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하면서 본안 심사가 가능한 상태로 3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승인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상소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상소제도를 창설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⁶⁴⁾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국제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관력이 없다고 하여 중재판정에 단서를 현행법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외국인 패소당사자가 자국법원에서 집행소송을 당한 경우 승소당사자는 중재판정에 기한 기관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중재판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재지를 선택할 때 중재지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나 정지 등 그 개입이 법률상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⁶⁵⁾를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효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단서는 국제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현행 중재법 하에서, 별소를 통한 상소가 인정되면, 국제법률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승인거부사유가 발생하면 4심제 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알려질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제중재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법을 개정하여 별소를 항소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3심제가 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률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별소의 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는 경우(대부분이 한국인이나 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일 것)에는 한국에서

63) 중재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제35조 단서의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승인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기 때문에, 중재판정이 승인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기관력이 없고, 따라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해서 다시 중재를 하거나 별소를 제기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반대 견해가 있다.

64) 여기서 말하는 상소는 중재절차 내에서 하는 상소와는 다르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윤진기, “2016년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별소의 심급 제한,”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2017, pp.26-27.

65) 김상찬·김유정, 앞의 논문, p.139 각주 12.

중재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건을 취급하는 국제변호사⁶⁶⁾들은 중재를 선택하는 이상 일이 분명하게 해결되는 것을 더 선호할 수가 있다. 또 의뢰인들도 중재사건이 뜻밖에 소송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판정의 불확실성은 그 판정의 신뢰성 더 나아가 그 중재지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행 중재법 제35조의 단서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⁶⁷⁾

(5) 취소소송 배제합의의 인정

국제적으로는 중재가 사적자치에 의해서 인정되는 분쟁해결제도인 점을 강조하여 국제중재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 국제사법은 외국당사자들 사이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고,⁶⁸⁾ 2011년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⁶⁹⁾⁷⁰⁾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에 대하여 진보적 입장을 보여 온 소수의 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재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취소배제합의에도 찬성하지 않을 정도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보여 왔다.⁷¹⁾

그러나 현행 중재법 하에서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문제가 논의되면서, 그동안 중재제도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유일한 불복수단’으로서 존재해왔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한 현행 중재법 제34조 제1항이 동법 제35조 단서에 대한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사문화되었다고 새길 가능성이 높아

66)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국제변호사’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67) 오히려 중재판정의 효력 규정 자체를 영미법계 국가와 같은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 관련 규정들이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입법 기술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8) 스위스 국제사법 제192조는 그러한 배제합의는 스위스 내에 당사자들의 거주지, 상거소 또는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이호원, “한국의 최근의 중재법 개정논의—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2호, 2013, p.15 각주 56.

69)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522조 제1항은 국제중재의 당사자들이 프랑스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건형·유병욱,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2011. 11, p.110.

70) 보다 다양한 입법례에 대해서는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16권 1호, 2007, p.248 이하 참조.

71) 이른바 중재판정취소배제합의의 인정문제는 중재법상의 오래된 쟁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대체로 소극적이다. 근자에 한국을 중재지로 하는 ICC중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의 시나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전면 배제하거나 취소사유를 일부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한국과 별로 관련이 없는 분쟁에 관한 한 배제합의를 허용하는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의 논문, p.251 당사자들의 국적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의견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윤진기,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국제거래법학회,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10.14., p.23.

졌고, 만약에 제35조 단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별소를 인정하게 되거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입법에 의하여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들이 그것을 배제하는 합의를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까지 당사자에게 포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서 집행되는 이상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관여와 감독을 받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중재나 국제중재를 구분하여 취급하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와 같은 중재선진국은 쉽게 성큼 성큼 취소의 소를 배제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

국내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중재와 법원 간의 관계는 주로 감독과 통제에 기초한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 개념이나 이론들이 거의 대부분 수입품이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창의적으로 한 것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상태로는 언제나 입법 분야에서 ‘세컨드 무버(Second mover)’로 남게 되어 희망이 없다. 다소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입법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재판정 취소배제합의 인정문제는 퍼스트 무버의 문제가 아니라 세컨드 무버도 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갑자기 국가의 경제력이 국제적으로 상위에 오르고 중재를 활성화시켜 중재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진취적으로 중재와 법원 간의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국제변호사들이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이 명확하게 처리되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재판정 취소를 배제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소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 경쟁국가들이 시설 등 규모의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비되면, 결국 시설보다는 중재법이나 지리적 요인이나 경제적 기반이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요인이나 경제적 기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아시아 최고의, 나아가 세계 최고의 중재법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 확보 대안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중재법’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세계의 중재법은 진화 중에 있으며, 더 나은 중재법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최고의 중재법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중재법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계에서 중재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재법이 가장 좋은 중재법이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나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중재법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짐이 될 수도 있다. 중재법 분야에서 세컨드 무버(Second mover)로 남아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다소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는 의지와 야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검토한 몇 가지 사항은 수요자 중심의 중재법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될 과제로 생각된다.

3. 국제중재학회지 육성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국제 중재지가 되는데, 저명한 국제학술지가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명한 국제중재학회지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경우 중재발전이나 홍보에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논증할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자의 생각을 토대로 검토해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저명한 국제학술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두 가지 주된 효과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고급 중재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 형성된다. 저명한 국제적인 중재학술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나 법률가들의 논문이나 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술지를 통해서 그들의 전문지식이나 식견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그들의 비즈니스 외연이나 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전 세계의 중재인, 변호사, 판사 등 법률가와 중재 관련 연구자 및 미래의 전문가로서의 대학원생 등이 이 학술지를 본다고 가정하면 이 학술지에 자신의 글을 게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 학술지 발간을 매개로 하여 전 세계의 중재 전문가와 미래의 중재 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빅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미래 사회에 이보다 쉽게 중재 관심자들의 정보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전 세계적인 홍보수단이 확보된다. 국제적으로 중재를 홍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국제적으로 중재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가 있다.⁷²⁾ 그중에서 국

72)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로펌에서 개별적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신의 중재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고비용이 소요되며, 홍보대상도 제한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홍보는 국제변호사나 기업간부 등 실무요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실무상 이러한 홍보 방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효율적이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시장의 성격상 이런 활동이 중재를 유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제중재학술지를 이용한 홍보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홍보의 대상도 광범위하고, 중재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어서 놓치기는 아까운 홍보의 수단이다.

국제중재학술지를 이용한 한국 중재에 대한 홍보는 기존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로펌이 행하는 해외 홍보에 비하여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학술지 보급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 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의 도서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가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어서 영속적이고 무너질 염려도 없다.

한 국가의 중재학술지에 대한 신뢰도는 장기적으로는 중재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기관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내적으로도 기업이나 국민들이 중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요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분야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급 이미지를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정하게 국제적 명성을 지니는 중재 학술지를 발간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국가의 소중한 중재 자산이 되며, 장기적으로 중재 강국의 이미지를 유지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국제중재학술지는 주로 중재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실무적 쟁점을 다루거나 사례분석, 또는 각국의 중재제도의 변화 및 발전에 관한 심층연구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된다. 만약 여기에 수시로 우리나라 중재 시스템의 발전상을 특집 등으로 소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중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중재학회에서는 학술지 「중재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재 관련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는 압도적으로 중재 및 ADR분야에 특화된 학술지이며, 연간 총 4회 발간한다.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총 4회 발간 중 한 호(가을호)를 100% 영문 논문만으로 구성된 영문지로 별도 발간하고 있다. 이 영문지는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라는 잡지명으로 발간된다.⁷³⁾

학회의 첫 영문지인 2013년 9월호(Vol.23 No.3)와 2014년 9월호(Vol.24 No.3)의 저자의 면면은 매우 화려하다.⁷⁴⁾ 이러한 저명저자의 논문으로 학술지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 세계

되는 것은 이런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소속 관계자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73)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발간 영문저널의 제목이 Asia-Pacific Journal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중재연구」의 영문호의 경우,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로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 논문을 유치함으로써, 범세계적 차원의 학술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74) 2013년 9월호의 경우, 스위스 Basel대학의 Ingeborg Schwenzer 교수, 스페인 Madrid대학 교수이며 국제중재 전문가인 Bernardo M. Cremades 변호사, 2010년 UNIDROIT 국제상거래계약법원칙 편집위원장이며 초안 작성자인 Elon법대의 Henry Deep Gabriel 교수, 싱가포르 Baker & McKenzie, Wong & Leow의 분쟁해결팀 책임자인 Leng-Sun Chan, 뉴욕소재 King & Spalding국제중재실무그룹 파트너인 Caline Mouawad 변호사, 이집트 수석법관을 지낸 Paris I 대학 카이로캠퍼스 국제거래법 교수인 Ismail Selim 등이 저자로 되어 있다. 2014년 9월호의 경우, ICC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인 J. Otis Rodner, 터키 이스탄불 Kemerburgaz대학의 Ahmet

적으로 권위 있는 중재학술지에서도 드문 일이다. 또한 해외 저명 학자 및 실무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중 Anne-Marie Whitesell교수는 프랑스 파리 소재 저명 국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Herbert Kronke교수는 UNIDROIT 사무총장을 역임한 저명인사이다. 또한 Kirby 변호사 역시 국제상업회의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⁷⁵⁾

특히, 2014년 가을호부터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법학전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 데이터베이스 및 HeinOnline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다. Westlaw 검색사이트의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모든 로스쿨에서 발간하는 법학 전문 학술지들과 미국의 주와 연방의 법령 및 판례뿐만 아니라 영국, EU, 캐나다 홍콩,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각종 법률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법학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데이터베이스이다. Westlaw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법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률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대부분 법학전공 학자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Westlaw에서 최신 참고문헌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HeinOnline은 90년 전통의 William S. Hein & Co 사가 운영하는 세계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현재 전 세계 175개 국가에 서비스 되고 있다.⁷⁶⁾

또 학회는 2014년 9월 24일,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25권 1호지부터, DOI 고유번호를 모든 개별 논문에 부착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나 논문이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논문이 인용될 가능성을 제고하였다.⁷⁷⁾ 학회는 이 외에도 향후 국제학술지 저명 데이터베이스인 SSCI 및 SCOPUS 등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로는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과 「Arbitration International」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국제학술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중재학회는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를 통하여 고급 중재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 학술지를 세계 중재 업계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두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중재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 된다. 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가 국가적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중재 분야에

Cemil Yildirim교수, ICC 국제중재법원 사무국 자문관인 Gustav Flecke-Giammarco,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저명한 중재실무자인 Christopher Boog와 James Menz, International Journal of Arbitration의 편집위원이며 Versailles-Saint-Quentin대학 중재법 교수인 Jalal El Ahdab 박사 등이 수준 높은 원고를 투고하였다. 한국중재학회, “2015년도 학술지 계속평가 내용평가 설명자료 및 기관 규정” 한국연구재단 제출 보고서(이 자료는 학술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학회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2015. 4, p.6.

75) 자세한 영문지 심사위원 위촉 명단은, 위의 보고서, p.8 참조.

76) 위의 보고서, pp.15-16.

77) 위의 보고서, p.20.

서도 국제적 학술지에 대한 비전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 하루아침에 학술지의 권위가 만들어지지 않는지만, 그 권위를 만드는데 다른 홍보 수단에 비하여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국제학술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재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한 학술적 기반은 중재제도 선진화의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재의 경쟁력은 제도적인 측면 외에 내용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 부분은 중재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론적 깊이와 중재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론 및 연구 성과의 대외적인 공유를 통한 신뢰성 확보로 이루어진다.

중재선진국의 경우, 중재인들이 많은 책과 논문들을 발표하고, 학술적 다작으로 외부와 소통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그로 인해 수백 건의 중재사건을 판정하는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선순환을 창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중재인들은 이러한 활동을 중요시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학술적 활동의 기반조차 변변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술지의 발간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술지는 성격상 느리고 천천히 성장한다. 40-50년 후에 우리나라가 중재대국이 되었을 때 국제중재학술지는 우리의 발전된 중재를 전 세계에 홍보해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중재학술지의 육성 지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경쟁 중재기구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학술지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AIAJ)를 발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The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AIAJ) aims to be the thought leader on issu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AIAJ commenced publishing in 2005 and is published twice a year. The journal carries articles, notes on awards, legislation updates and book reviews.

Professor Lawrence Boo and Mr Gary Born are the General Editors.

The General Editors are solely responsible for setting editorial policy guidelines and accepting contributions to the journal. A style guide for authors has also been prepared to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manuscript. These can be viewed at the links below.⁷⁸⁾

국제적인 중재경쟁에는 학술지 경쟁도 포함되어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필요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실천해야 이미 넘어간 상당 부분의 중재시장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

78) <http://www.siac.org.sg/2013-09-18-01-57-20/2013-09-22-00-27-02/asian-international-arbitration-journal>

4.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시스템 개발

제4차 산업혁명이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⁷⁹⁾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⁸⁰⁾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물리적 시스템, 전자적 시스템, 생물적 시스템이 대용합한 인류역사 최대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⁸¹⁾

중재산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비와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전략이 우리나라 중재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은 ‘듣는 기술’ 중심의 분쟁해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시키면 새로운 대체적 분쟁해결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은 원래 생각이 전혀 다른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인데, 듣는 기술은 당사자의 생각을 보다 자연스럽게 꺼내는 기법이며,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당사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면서, 양 당사자의 점점 유무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매개로 당사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각종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듣는 기술을 자동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활용할 수 있다.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Civil Resolution Tribunal Act)에서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분쟁해결기구를 입법화하고, 민사분쟁해결심판소를 설치하여, ‘분쟁해결 익스플로러(Solution Explorer)’를 활용하여 집합건물 관련 사건에 대해 자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⁸²⁾ 이 시스템의 특징은 본격적인 협상이나 조정을 진행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입력 내지 선택한 정보를 토대로 분쟁을 분석하고, 그 해결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이후의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하는 데 있다.⁸³⁾ 비록 CRT는 \$ 5,000 이하의 소액 청구권 분쟁과 모든 금액의 집합건물 (아파트, 콘도미니엄) 분쟁을 해결하지만, CRT는 사람들이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업적 접근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듣는 기술을 IT기술과 잘 결합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79)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이다.

80) 여기서 4차란 토플러가 말한 3개의 물결에 이은 네 번째가 아니라 산업혁명의 시기를 세분하여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81) 백악관에서는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미래의 직업을 위한 재교육과 초등교육 정책 수정,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slideshare.net/ssuser1c9e5a/ss-71279342> (2018.06.15. 검색) 참조.

82) 박기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의 미래”, 2017 한국중재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2017. 12.18., p.31; <https://civilresolutionbc.ca/> (2018.06.15. 검색)

83) 위의 자료,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solution-explorer> (2018.06.15. 검색)

이 외에 의사결정시스템에 기반을 둔 협상지원 시스템인 ‘Smartsettle’과 같은 것이 있다. Smartsettle은 모든 유형의 사례에서 의사 결정자에게 시간, 비용 및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중 당사자 전자 협상 시스템인데, 양측 간 협상가가 양적 및 질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절충점을 명확히 하는 특징이 있다. Smartsettle의 인터넷 네트워크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기밀 및 보안을 유지하는 특허 받은 중립서버를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당사자를 연결하며, Smartsettle은 강력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충되는 목표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되어 있다.⁸⁴⁾ 게임이론을 활용한 협상지원 시스템(Negotiation Support System)인 Smartsettle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 현재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Smartsettle One과 Smartsettle Infinity(무한성)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⁸⁵⁾

우리나라도 분쟁해결에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 10개 평가분야 중 ‘법적분쟁해결’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⁸⁶⁾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때문으로 생각된다.⁸⁷⁾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활용은 그 중심이 대체로 절차적인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있는데 반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견에서 협상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어 쉽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주어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차이가 크다.

중재진흥법에 의하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어,⁸⁸⁾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⁸⁹⁾ 또 이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⁹⁰⁾

84) <https://www.smartsettle.com/> (2018.06.15. 검색)

85) 박기주, 앞의 자료, p.32.

86) 위의 자료, p.27.

87)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15. 3. 23. 민사집행 및 비송 사건까지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소송 진행 측면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8) 중재진흥법 시행령 제4조.

89) 중재진흥법 제4조.

90)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2. 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면, 단순히 절차만 온라인으로 하는 분쟁해결 시스템보다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협상지원과 중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맡겨두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서 Dr. Thiessen처럼 Smartsettle과 같은 알고리즘을 토대로 협상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중재와 연결시켜 유료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업을 기획한 벤처기업은 법무부나 관련 주무부서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사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중재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여기에 관여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자는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당사자로부터 시스템 수수료를 받은 이 벤처기업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을 닫고 애써 개발한 기술을 사장시켜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천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9천200만 달러(대략 2천9백억 원)로 3배 성장하였다고 하며, 전자청구, 법률사무관리 등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38억2천800만 달러 규모이며 2019년까지 57억6천 300만 달러(대략 5조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⁹¹⁾

이미 입법적으로 중재를 산업의 한 분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법률과 기술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리걸테크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단 하나의 벤처기업도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다. 금융규제가 많아서 우리가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핀테크 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재의 산업화에 있어서는 변호사법에 관련된 것이 핵심적인 규제이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제는 철폐해야 할 것이다.

5. 중재교육과 예산배분

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재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변확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중재교육을 통하여 중재의 편리함과 신속함, 그리고 공정함 등 중재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1) 박기주, 앞의 자료, p.30.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인다.⁹²⁾ 그러나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중재교육의 방법에 따라 중재활성화에 미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중재교육의 경우에도 공급자를 위한 교육보다 소비자를 위한 교육에 교육의 핵심이 놓여야 한다.⁹³⁾

중재교육은 교육의 대상, 목적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 검토한다. 먼저, 교육의 대상은 중재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중재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다르다. 공급자를 위한 교육은 중재인이나 변호사, 기타 로스쿨 학생을 상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은 이미 잘 시스템화 되어 있다. 수요자를 위한 교육은 기업경영자, 자영업자, 사내변호사, 기업법무팀, 주부, 대학생, 초중고 학생 등 잠재적 중재고객들이 대상이 된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서울국제중재센터 등에서 해온 교육은 이 교육대상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 중재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가 활성화 되려면, 기업경영자(중소기업인 포함), 자영업자, 사내변호사, 기업법무팀뿐만 아니라 주부, 대학생, 초중고 학생 등 잠재적 중재고객들에게 두루 중재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중재인, 변호사, 로스쿨 학생, 기업경영자, 자영업자, 사내변호사, 기업법무팀 등은 현재 당장 중재에 종사하거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주부, 대학생, 초중고 학생 등 잠재적 중재고객들에게는 중재활성화의 비전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야 한다.

주부, 대학생, 초중고 학생 등 잠재적 중재고객들에게 하는 중재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은 아니다. 현재의 국가 교육 시스템을 고려하면, 먼저 각급 학교의 교사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는 전국에 흩어져 지식의 전달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지식인 집단이다. 교육의 기본 능력이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 인프라도 구비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파력이 있는 집단이다. 중재교육을 위한 학생용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⁹⁴⁾ 이 프로그램의 교육 지도자로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사를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 교육’의 형태로 교사들에게 중재교육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

92)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해외 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고, 국내에서도 각종 기업실무자나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강습회 등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것은 그 실질이 교육이라기보다는 홍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3)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재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중재인 양성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문제를 주로 생각한다.

94) 만약 시범용 Smartsettle 같은 협상프로그램을 만들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나아가 주위의 분쟁을 이 시스템으로 해결하도록 실습을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중재 고객인 학생들에게 중재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전파할 수 있어서 중재시장의 저변확대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재만 교육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중재는 이상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사건 수는 분쟁의 수에 비하여 지극히 미미하여 그 수요가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교사를 통한 후세대 중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정과 중재를 함께 섞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교육을 하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정과 중재는 다 같이 대체적분쟁해결 제도로서 서로 선후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조정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그 수요는 무제한적이므로 양자를 함께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재교육을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중재라는 것이 당장 사회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이므로 돈을 지불하고 이를 수강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 중재지식은 단지 장래를 위한 교양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재의 잠재적 소비자인 일반인을 중재교육에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중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재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천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교육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⁹⁵⁾ 대한중재인협회의 교육도 중재인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일반 기업인 대상 교육은 양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재학회는 연구단체이지 교육단체가 아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중재진흥법에 따라 중재활성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법무부가 과연 이러한 교육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없지 않다. 교육의 전문기관이 아니고, 중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중재 담당 부서의 정기적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 ‘중재교육원’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중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하여 꾸준히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자 교육은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로펌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재 서비스 수요자는 현재의 중재교육이 미치지 않은 기업경영자(중소기업인 포함)나 자영업자, 주부, 대학생, 초중고 학생 등 잠재적 중재소비자들이다.

중재교육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무부처에서 거의 관심이 없는 분야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 받기도 힘들고, 돈이 없으니 교육의 계

95) 중재교육의 핵심주체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중재교육을 관찰해보면 대체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당장 눈앞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기적인 중재진흥을 위한 교육에는 역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획조차 세울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중재진흥법에도 중재교육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중재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는 ‘중재산업진흥기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고 하여 ‘교육’은 빠져 있다. 물론 홍보에 교육이 들어간다고 해석하거나⁹⁶⁾ ‘홍보 등’이라고 하였으니 이 ‘등’에 교육을 추가하여 해석하면 된다. 사실은 교육만큼 중요한 중재진흥 기반은 없는데, 입법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니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과 홍보는 차이가 있고, 법조문에는 “연구, 교육, 홍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재교육을 위한 예산을 배정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재진흥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제8조, 제9조 등을 연결시켜 해석해보면 중재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⁹⁷⁾ 이제 중재진흥법에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중재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책임을 법무부가 지게 된다.

중재교육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야 한다. 중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재인 양성교육보다도 중재 서비스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혹자는 중재인 자격제도를 설치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는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실질은 상당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고 자격이 부여될 성질이 아니고, 중재인의 수요도 많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변호사와 교수, 앞으로 배출될 로스쿨 졸업생 등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넘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중재가 국내에서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재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중재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중재수요자가 부족한 것 때문이다.(이것은 중재 건수를 살펴보면 당장 알 수 있다) 따라서 급한 것은 중재인 양성이 아니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재소비자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진흥법에는 중재인 양성과 그 재정적 지원은 명문으로 드러나게 규정되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중재 서비스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은 동법을 잘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야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양자 모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해석되지만, 혹시 정부의 정책집행자들이 드러나게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 양성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보다 중요한 중재 서비스 소비자의 교육에는 재정지원에 인색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96)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교유예산은 홍보예산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예산의 액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97) 중재 서비스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은 중재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법무부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이 교육 사업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기관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이 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해은 결과이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탈피해야 중재의 저변이 확대된다. 중재교육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IV. 중재진흥법에 대한 검증

1. 검증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

중재진흥법은 중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 중재기구가 국제중재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국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재의 가치를 인정하여 중재수요자가 되어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되면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잘 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재진흥법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중재진흥법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마다 확인하여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이른바 ‘데밍 사이클(Deming Cycle)’이라고 불리는 PDCA 사이클이 경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PDCA 사이클은 Plan, Do, Check, Action 4글자의 약자로,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ion) 4단계의 실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순환주기를 말한다.⁹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lan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Do는 계획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며, Check은 측정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와 목표를 비교하는 등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Action은 실제로 개선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입법의 성과를 달성하는데도 경영성과를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PDCA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대적으로 치열한 국제 중재경쟁 속에서 중재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시기에 있고, 이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였으니, 당연히 그것의 진행 과정을 검증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다.

2. 입법 검증의 한계와 대안

입법에 대한 검증 시스템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없는 것 같다. 입법평가 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예

98) PDCA 사이클은 Dr. W. Edward Deming이 고안한 품질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관리회계에서도 쓰이지만 자기계발 같은 곳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업무의 효율적이고 꾸준한 관리와 결과 달성 등에 목적이 있다.

산을 가져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감사의 내용과 정도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서 정기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많고, 대체로 말잔치로 끝나게 된다.

국정감사를 통한 검증의 경우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업을 위축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그것이 국제중재이든 국내중재이든 10년은 내다보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7년에 1600만 달러(약 176억 원)를 투자한 것을 필두로 6년 동안 총 584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중재사건 수가 99건(2008년)에서 343건(2016년)으로 3.46배가 되는데 10년이 걸렸다.⁹⁹⁾ 지나치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도록 다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검증은 다소 한계가 있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23.5억 원의 사업수익을 거두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2015년 총 3천8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3억3천백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¹⁰⁰⁾ 중재가 산업으로 취급되는 이상 대한상사중재원도 하나의 경제활동주체로서 다른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성과를 평가받지 않을 수 없다.

홍콩국제중재센터는 흥미롭게도 연차보고서에 감사보고서와 ‘Income and Expenditure Statement’를 함께 첨부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수입과 지출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며, 특별히 수익을 누적시켜 가는 구조는 아니다.¹⁰¹⁾

중재산업에서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식은 경제활동 주체가 직접 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재기구 자체의 매년의 손익 여부 자체는 적자가 누적되지 않는 한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검증방법은 법무부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팀을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꾸준히 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에 문제가 무엇이며,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99) 장준호, 앞의 자료, pp.61-62.

100) 한종규, 앞의 논문, p.103.

101) HKIAC Annual report 2014, 2015, 2016.

그러나 조직 내부의 자체평가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한국중재학회 등이 한국경영학회 등과 함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중재산업이 발전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례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지표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중재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법적 규제가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완화되고 있는지 등 중재진흥법의 입법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실제로 정책들이 집행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에서 중재산업의 진흥에 대한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국제중재 경쟁력은 현재는 경쟁국에 비하여 다소 뒤지지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국제경제적인 기반은 탄탄하며, 국내중재 환경도 중재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중재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중재를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중재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국제중재나 국내중재 모두 시장에 맡겨 두면 발전될 것이다. 정부는 중재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동안의 규제를 완화해주기만 하면 된다. 중재산업이 정착되고 진흥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가능한 시장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리적 경제적인 요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적어도 최고의 중재법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중재법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재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재법이 가장 좋은 중재법이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나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중재법을 가지는 것이다. 중재법 분야에서 세컨드 무버(Second mover)로 남아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다소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는 의지와 야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중재법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요자 중심의 중재법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 상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집행문부여와 집행신청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의 효력을 규정하는 중재법 제35조 단서는 폐지하는 것이 국제중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취소소송 배제합의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제중재학술지의 육성도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장에서 중재참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존재하는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중재소비자를 교육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국내 중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재교육원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 또 중재

진흥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가하고 검증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국제중재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국들이 이미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하기 때문에 국제중재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재기구가 마치 기획사처럼 기동력과 전략을 가지고 경영될 필요가 있다. 국내중재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규모가 있고, 소송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정책여하에 따라서 국내 중재시장의 규모는 급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재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재활동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와 중재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 왕중추 저, 허유영 옮김,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올림, 2016.
- 김봉진, “법무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지정토론문)”, 「저스티스」 158-3, 2017.
- 김상찬·김유정, “싱가포르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2014.6.
- 박기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의 미래”, 2017 한국중재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2017.12.18.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16권 1호, 2007.
- 성준호, “중재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2017.12.
- 안건형·유병욱,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2011. 11.
- 윤진기,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12.
- _____, “2016년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별소의 심급 제한”,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2017.
- _____,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 독립성 확보”,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국제거래법학회,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5.10.14.
- _____, “중재제도의 선진화를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한다”,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12.1., 권두사.
- 이수철,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보고서」, 삼일회계법인, 법무부, 2016.
-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2017.
- 이호원, “한국의 최근의 중재법 개정논의-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2호, 2013.
- 장준호, “중재법 개정계획”, 2014년 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중재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제언, 한국중재학회, 2014.7.2.
- 정운섭, “국내 중재절차와 실무-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제134기 중재/ADR 특별연수 자료집, 2014.4.19.

- 한국중재학회, “2015년도 학술지 계속평가 내용평가 설명자료 및 기관 규정” 한국연구재단 제출 보고서(이 자료는 학술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학회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2015.4.
- 한종규, “국제중재산업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구-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5호, 2016.7.
- 홍석모, “중재상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2010.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발표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주요내용”, 보도참고자료, 2018. 2. 16.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 개최”, NewsWire, 2018-04-20,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8013> (2018.06.12. 검색)
- “2016년 한국 GDP 세계 11위… 11년째 10위권 밖” ChosunBiz, 2017.08.09.,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9/2017080900680.html#csidxbc67c9f37909b41bab45e5bf401205e
- “서울국제중재센터 내달 개소..성공조건은?” 파이낸셜뉴스 2013.04.22., <http://www.fnnews.com/news/201304221514472125> (2018.06.12. 검색)
- 통계청, 외국계기업 국내진출 현황[2005~], 자료갱신일: 2017-11-0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218 (2018.06.16. 검색)
- 2016년 사법연감.
- HKCIAC Annual report 2014, 2015, 2016.
- SIAC, Annual Report 2017.
- KLRCA Annual Report, <https://aiac.world/wp-content/annualreport/2016annual/PDF.pdf> (2018.06.16. 검색).
- Seow Bei Yi,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y to open office here” PUBLISHED JUN 29, 2017, 2:39 AM SGT, file:///C:/Users/yoonkim/Downloads/International%20arbitration%20body%20to%20open%20office%20here.pdf (2018.06.12. 검색)
- <https://civilresolutionbc.ca/> (2018.06.15. 검색)
- <https://www.cpradr.org/> (2018.10.16. 검색)
-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solution-explorer> (2018.06.15. 검색)
- <https://www.smartsettle.com/> (2018.06.15. 검색)
- <http://www.siac.org.sg/2013-09-18-01-57-20/2013-09-22-00-27-02/asian-international-arbitration-journal> (2018.06.15. 검색)
- <https://www.slideshare.net/ssuser1c9e5a/ss-71279342> (2018.06.15. 검색) 참조.

ABSTRACT

Th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Jin-Ki Yoon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Key Words : arbitration industry, arbitration appeal system, grant of execution claus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exclusion agreement of setting aside, Attorneys-at-Law Act, arbitration education, Arbitration Promotion Act